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우주항공청에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0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. ~ 3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중 총계 “244”를 “24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43”을 “244”로 하며,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
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
관 “69”를 “7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우주항공청 공무원 정원표(제13조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44</u>	<u>245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243</u>	<u>244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 무관 · 기상사무관 · 환경 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 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 는 방송통신사무관	<u>69</u>	<u>70</u>	+1
·	·	·	
·	·	·	